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74 발의연월일: 2025. 4. 11.

발 의 자:허성무ㆍ이수진ㆍ전재수

장철민 · 이광희 · 김성환

김문수 · 임호선 · 서영교

염태영 · 임미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산불, 홍수,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,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.

특히,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융자, 상환유예 등 간접적 금융지원에 국한되고 있으며, 공장 전소 등으로 인한장기간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.

이에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 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, 시설복구비 지원,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 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9조의2(재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, 시설복구비 지원,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할수 있다.
 - ② 천재지변, 화재, 산불, 홍수,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영업결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9조의2(재해로 인한 피해 중
	소기업에 대한 지원) ① 중소
	벤처기업부장관은「재난 및 안
	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
	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
	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
	업에 대하여 영업결손에 대한
	경제적 지원, 시설복구비 지원,
	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
	있다.
	② 천재지변, 화재, 산불, 홍수,
	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
	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
	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
	는 영업결손에 대한 보상을 할
	<u>수 있다.</u>
	③ 제2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,
	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
	로 정한다.